

의안번호	2203074
의 퇴 인	임오경의원
회 답 일	2024. 8. 28.
추계번호	24C3076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2항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제2항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사서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에 대한 인력지원, 대출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 추
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력과 예
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표 1·2]와 같음

[표 1] 작은도서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현황(2024년)

구분	예산 (백만원)	지원규모	사업명
인력지원	7,330	순회사서 220명 작은도서관 584개관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순회사서 1인이 지역의 작은도서관 2~3개관 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316	작은도서관 100개관	-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사서, 은퇴교사 등의 책친구 지원 통한 프로그램 운영)
상호대차 프로그램 ¹⁾ 구축 지원	500	시·군·구 3개 지역 2억원 내외	- 작은도서관 연계 공공도서관의 지역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 -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및 책이음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표 2] 작은도서관 관련 지자체 지원 현황(2023년)

(단위: 관수)				
항목	인력 지원	예산 지원	도서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전체	1,402	3,562	2,367	2,060
- 공립	624	1,013	745	591
- 사립	778	2,549	1,622	1,46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인력지원, 대출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상호대차(相互貸借, Inter Library Loan):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공하지 못할 때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협정을 맺은 도서관 간에 소장자료를 서로 빌려주는 제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